



즉시 배포용: 2022년 12월 12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혐오 범죄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에 서명**

***법안(S.7658-B/A.8869-B)에 따라 혐오 범죄의 피해자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취소되거나 요금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

Hochul 주지사는 오늘 혐오 범죄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S.7658-B/A.8869-B)에 서명했습니다. 새로운 법은 보험사가 혐오 범죄로 인한 손실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취소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 갱신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보장합니다. 새로운 법은 개인, 종교 단체, 또는 종교, 자선, 또는 교육 목적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에 적용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모든 혐오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끔찍한 범죄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혐오 범죄의 대상이 된다면, 그는 보험을 잃는 것을 걱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법안을 통해 우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뉴욕 주민의 존엄과 존중을 보호할 것입니다."

법안(S.7658-B/A.8869-B)에 따라, 뉴욕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가 청구권이 혐오 범죄로 인한 것임을 증빙을 통해 증명하는 경우, 최근 5년간 보험을 가입한 개인이나 부동산이 당한 혐오 범죄의 결과 한 건 이상의 청구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취소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혐오 범죄 가해자는 해당 법안을 활용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자신의 보험료 인상을 막거나 가입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습니다.

**Anna M. Kaplan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모국의 반유대주의 폭력으로부터 도망쳐야 했던 유대인 난민으로서, 팬데믹으로 인한 전국의 증오 및 극단주의 폭력의 폭발적인 증가는 저에게 매우 큰 상처입니다. 저는 모든 순간 증오에 맞서 싸워왔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안은 뉴욕주에서 증오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혐오 범죄 피해자 누구도 보험사에 청구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청구 거부 등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려서는 안 되며, 모든 피해자는 혐오 범죄 사실을 경찰에 당당히 신고하고 정의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법안을 제정해 혐오 범죄 피해자를 위해 정의를 실현하고 위기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주신 주지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Simcha Eichenstei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혐오범죄의 피해자들은 다시 차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번 법안은 보험사들이 혐오 범죄 청구권에 대해 보험 혜택을 제공하도록 보장합니다. 이번 법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위해 나서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Hochul 주지사는 취임 후, 혐오 폭력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혐오 범죄 해결을 위해 조치를 취했습니다. 11월, Hochul 주지사는 혐오 범죄로 기소된 사람에게 훈련 또는 상담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종교, 인종, 피부색, 민족, 성별, 출생국, 연령, 장애,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또는 표현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며 관용하고 이해하기 위한 주단위의 캠페인을 시행합니다. 주지사는 또한 비영리, 지역사회 기반 단체의 안전 및 보안 조치 강화를 위한 5,000만 달러를 비롯해, 늘어나는 테러 공격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는 주 전역의 240개 비영리 기관에 연방 자금 4,6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비영리기관들이 잠재적인 증오 범죄 공격에 대비하여 보안 인프라를 강화하고 대비를 개선하도록 돕기 위해 362개 비영리기관에게 작년 지급된 약 4,3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바탕으로 합니다. 또한 주지사의 [회계연도 2023 제정 예산\(Enacted Budget\)](#)은 혐오 범죄에 대한 체포 및 보석 조건을 강화하여, 모든 혐오 범죄 관련 체포자가 만 18세 이상인 경우 이에 해당하도록 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